

# 교무위원회 규정

제정 : 2001. 06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담당 : 기획실(950-5424)

----- 목 차 -----			
제1조(목적)	제2조(심의사항)	제3조(구성)	제4조(위원장)
제5조(임기)	제6조(회의 소집과 의결)	제7조(회의록)	제8조(업무관장)
제9조(시행세칙)			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학칙 제70조 내지 제72조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**제2조(심의사항)** 교무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발전 종합 계획과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3. 학부(전공)의 증, 개편 및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 기구 및 부속, 부설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
5. 교육 과정 및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
6. 교수회의에 부의할 사항
7. 입학, 졸업, 수업, 시험에 관한 사항
8. 기타 본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, 처(실)장으로 조직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**제4조(위원장)** 교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**제5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(개정15.02.06)

**제6조(회의 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2/3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업무관장)**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한다.(개정15.02.06)

**제9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